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유해화학물질관리	문서번호	SY(원주)-SHE-G-35
		제정일자	2020. 01. 15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2 of 6

##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운영절차
5. 관련기록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5
		제정일자	2020. 01. 15
	<b>유해화학물질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3 of 6

## 1. 목 적

이 지침은 회사의 생산활동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적정 보관, 사용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인명사고 및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삼양식품(주) 원주공장(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사용하는데 적용한다. 단, 연구, 실험 목적의 소포장 약품은 제외한다.

## 3. 용어의 정의

### 3.1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 3.2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중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질 .

### 3.3 특정유독물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하는 유독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4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상의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말한다.

## 4. 책임과 권한

### 4.1 환경안전팀장

4.1.1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등) 제·개정

4.1.2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 취급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도록 기술적인 지원 및 점검.

4.1.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요구사항 준수

4.1.4 부적합 / 시정조치 요청서 발행

4.1.5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에 관한 사무

4.1.6 자체 방제계획서 유지 운영에 관한 사무

### 4.2 유해화학물질담당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에 의한 유자격자

4.2.1 유독물 사용 시설에 관한 인허가 사항

4.2.2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 준수

4.2.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5
	<b>유해화학물질관리</b>	제정일자	2020. 01. 15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4 of 6

4.2.4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2차오염 저감을 위한 개선활동

4.2.5 유해화학물질 방제장비에 대한 관리

#### 4.3 해당팀장

4.3.1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작성.

4.3.2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구입 및 MSDS 자료 확보

4.3.3 MSDS 작성, 배포 및 교육

4.3.4 유독물 보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4.3.5 작업지도서 및 작업표준 작성

4.3.6 유해화학물질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관리

4.3.7 특정업무 절차에 따른 관리 감독

### 5. 업무절차

#### 5.1 유해화학물질 구매 및 MSDS 관리

5.1.1 관련부서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표를 1회/분기 작성하여 환경안전팀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5.1.2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목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구매.사용 할 때에는 환경안전팀에 미리 통보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3 환경안전팀, 관련부서팀장등 유해 화학물질의 시방을 결정하는 부서는 MSDS에 포함 되어야 할 시방을 협력업체에 요구하거나 결정하여 구매시방서 또는 도면을 작성하고, 구매부서/ 생산 / QC부서에 통보한다.

5.1.4 구매부서는 발주서를 접수하면 구매 시방서를 협력업체에 송부하여 MSDS 작성 정보를 요청 하여 입수하고, 입수된 정보를 환경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 검토용으로 입수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입수부서에서 MSDS를 확보, 사용자에게 교육시킴)

5.1.5 관련부서장은 유해 화학물질 납품시 유해 물질 및 유독물표시를 용기별 부착토록 공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 운송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정에의한 표시판을 부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1.6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목표 및 세부적인 환경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유해성이 적은 화학물질로 대체 구매토록 하여야 한다.

5.1.7 관련부서장은 배포된 MSDS를 게시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1.8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한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적절한 방제 장비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 5.2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저장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5
		제정일자	2020. 01. 15
	<b>유해화학물질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5 of 6

### 5.2.1 취급시설 관리

- 1)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3) 환경담당 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5.2.2 저장시설 관리

- 1)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입고, 저장 중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및 점검 하여야 한다.
- 2) 환경담당 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 발생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3)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대기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한다.

### 5.2.3 감시시스템 관리

- 1) 유해화학물질 입고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2) 1회/연 유출감지센서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3) CCTV 등의 자료는 정기적으로 Back up 후 관리한다.
- 4) 경비실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 5.3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 5.3.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성상을 숙지한 후 작업표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5.3.2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방제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5.3.3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을 폐기시는 환경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대기관리지침", "수질관리지침", "폐기물관리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5.3.4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물질 사용, 공정개선,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방침 및 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5.3.5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 사용에 대한 결과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5년)하여 관리해야 한다.

## 5.4 비상사태처리

- 5.4.1 관련부서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중지시키고 환경담당 부서장에게 통보 후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안전보건환경경영지침서</b>	문서번호	SY(원주)-SHE-G-35
		제정일자	2020. 01. 15
	<b>유해화학물질관리</b>	개정차수	1 차
		페이지	6 of 6

5.4.2 환경안전팀장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영향 및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장총괄 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및 해당 설비의 가동중지를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6. 관련기록

- 6.1 관련부서장은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관리대장을 기록 및 관리한다.
- 6.2 유해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는 관련 교육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